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등>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6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15.

다. 회 부 일 : 2026. 1. 1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관할구역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Ⅲ. 검토의견

1.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2만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윤건영의원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생 략) ③ ~ ⑨ (생 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2만명----------2만명----------5개소----------. 1. ----------2만명---------- 2.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가 설치 사유는 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②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이며, 특히 재외국민수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3만명 단위로 1개소씩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재외투표소는 총 22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인구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된 투표소는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일본대사관 등 43개소에 해당함.

다만,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에 근접함에도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재외국민수가 10만명 이상인 LA·샌프란시스코·애틀란타의 경우에도 최대 3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 실제 수요에 비해 투표소 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한편 같은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을 제외한 국내 총 선거인 수는 44,363,148명이고 국내 투표소 수는 14,295개소로, 약 3,100명당 1개

투표소가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투표소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실제 투표자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재외선거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구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재외투표소는 현행 43개소에서 75개소로 증가하여, 총 3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추정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요건 완화를 통해 재외선거인등의 투표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참고	개정안 적용시 추가투표소 설치확대 주요 공관(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공 관 명	재외 국민수	추가투표소수	
		현 행	개 정 안
		3만 이상, 3만마다 1개 (최대 3개)	2만 이상, 2만마다 1개 (최대 5개)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221,759	3	5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160,640	3	5
애틀랜타총영사관	147,961	3	5
시카고총영사관	136,046	3	5
일본대사관	126,414	3	5
오사카총영사관	120,629	3	5
뉴욕총영사관	111,551	3	5
호치민총영사관	89,565	2	4
베트남대사관	76,200	2	3
시애틀총영사관	69,726	2	3
휴스턴총영사관	58,423	1	2
토론토총영사관	53,309	1	2
중국대사관	51,492	1	2
상하이총영사관	46,790	1	2
고베총영사관	42,546	1	2
댈러스출장소	42,364	1	2
미국대사관	41,930	1	2
칭다오총영사관	41,884	1	2
밴쿠버총영사관	38,523	1	1
나고야총영사관	36,630	1	1
시드니총영사관	35,353	1	1
요코하마총영사관	33,183	1	1
호놀룰루총영사관	32,791	1	1
필라델피아출장소	32,463	1	1
광저우총영사관	31,600	1	1
보스턴총영사관	30,638	1	1
영국대사관	28,078	0	1
필리핀대사관	25,493	0	1
인도네시아대사관	23,670	0	1
후쿠오카총영사관	20,650	0	1
싱가포르대사관	20,437	0	1
태국대사관	20,288	0	1
합 계		43	75